

[별표1] 월 이용료 <2025.01.01. 기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15%기준(일반)	9%기준(감경)	6%기준(감경)	0% 기준(감경)
1등급	2,306,400	345,960	207,576	138,384	0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0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0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0
인지지원	657,400	98,610	59,166	39,444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30분	16,940	150분	49,160
60분	24,580	180분	55,350
90분	33,120	210분	61,670
120분	42,160	240분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급 휴일 50% 가산		

※가산급여 중복시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음.

③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40%감경	60%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5	7,783.2	5,188.8
	가정 내 목욕	77,970	11,696	7,017.3	4,678.2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8,690	7,303.5	4,382.1	2,921.4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④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